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1640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4년 2월 5일
-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나.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1641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4년 2월 5일
-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다.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1642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4년 2월 5일
-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현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24.6.30. 만료 예정임.
- 청소년사업 관련 민간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및 시설운동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제6조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현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24.6.30. 만료 예정임.
- 청소년사업 관련 민간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및 시설운동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현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24.6.30. 자로 현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현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위기청소년 일시보호사업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40길 5-26
- 시설규모 : 지상 4층, (대지) 212.2㎡, (연면적) 333.37㎡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4. 7. 1. ~ 2027. 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34백만원(2024년)
 - 인건비 518백만원, 운영비 49백만원, 사업비 167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나.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현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의 보호 및 가정·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
- 시설규모 : 지상 2층, (대지) $241.56m^2$, (연면적) $483.12m^2$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4.7.1. ~ 2027. 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44백만원(2024년)
 - 「인건비 526백만원, 운영비 63백만원, 사업비 255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다.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현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제1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추진 필요성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관련 유해매체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지하1, 지상2 일부
- 시설규모 : 1,510.75 m^2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4.7.1.~2027.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재위탁)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6백만원(2024년, 국비 86백만원, 시비 220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32백만원, 운영비 57백만원, 사업비 17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2)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3)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2024 예산 편성

다. 합 의: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3건(재위탁 3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음.

〈 제322회 임시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의안번호	시설명	구분	위탁동의안 개요
1640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재위탁	- 소 재 지 : 강북구 한천로 140길 5-26 - 개관일자 : 2015.06.03. - 시설규모 : 지상4층 (333.37㎡) - 위탁기간 : 2024.7.1. ~ 2027.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734,631천원
1641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재위탁	- 소 재 지 : 중랑구 송림길 156 - 개관일자 : 2015.01.01. - 시설규모 : 지상 2층, (483.12㎡) - 위탁기간 : 2024.7.1. ~ 2027.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843,882천원
1642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 소 재 지 : 성북구 길음로7길 20 - 개관일자 : 2015.4.1. - 시설규모 : 지하1, 지상2 일부(1,510㎡) - 위탁기간 : 2024.7.1. ~ 2027.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305,633천원

※ 재계약 및 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 재위탁: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법률(「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로 한정되고,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 관리 등으로,
 -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경험(노하우 등) 등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활동·교류·문화·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청소년시설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 3개소 모두 2024년 6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상황인바, 민간위탁을 추진할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설형'과 '사무형' 구분

- 시설형 위탁 : 행정재산(서울시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義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사무형 위탁 :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義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맡겨 그의 명義와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동의안별 검토

1.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하 ‘총신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이하 ‘강북일시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2024.6.30.)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본 시설을 3년간(2024.7.1.~2027.6.30.)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현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
- 위탁 사무 내용
 - 위기청소년 일시보호사업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40길 5-26
- 개관일자 : 2015.06.03.
- 시설규모 : 지상 4층, (대지) 212.2㎡, (연면적) 333.37㎡
- 수용인원 : 10명
- 이용대상 : 9~24세 이하 남자청소년(가정 밖, 갈등가정, 해체가정 청소년)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민간위탁기간: 3년(2024. 7. 1. ~ 2027. 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734백만원(2024년,인건비-518백만원, 운영비-49백만원, 사업비-167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강북구청 인근에 위치한 강북일시쉼터는 2014년(개관)부터 현재까지 총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지상 4층의 시설로, 11명(정규직 6명, 비정규직 5명)의 직원이 7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가정 밖(위기) 청소년에게 일시보호, 가정·사회 복귀, 자립지원 등을 지원하는 시설임.

※ 쉼터 중 일시쉼터는 고정형과 이동형(차량)으로 나눌 수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일시보호를 통해 가정복귀가 주요 업무이며, 단기 및 중·장기(자립지원관 포함) 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생활·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구축된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2024년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인력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약직
정원	8	-	-	1	-	1	2	2	2	-
현원	11	-	-	1	-	1	2	1	1	5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금 현황 〉

(단위:천원)

2024	2023	2022	2021
734,631	690,237	626,256	618,860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과 〉

- 2014.8.14~2016.6.30. : 신 규 (학)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 2017.7.01~2019.6.30. : 재계약 (학)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 2019.7.01~2022.6.30. : 재위탁 (학)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 2022.7.01~2024.6.30. : 재계약 (학)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 2023년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사업추진 현황 〉

분야	사업명
목적사업	
보호사업	생활·긴급지원, 가출캠·독립가구 지원, 거리상담, 사이버아웃리치, 안심지킴이
상담지도사업	상담, 예술치료, 상담사례 슈퍼비전, 사례회의
교육문화사업	문화체육캠프, 진로체험, 토크데이, 동아리, 인권교육, 가출예방, 포럼 등
대외협력사업	지역주민나눔, 유관기관 협약, 실행/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운영
홍보/특화사업	홍보, 청소년복지시설 정신건강 지원
특별지원사업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쉼&맥터, 가정밖청소년 전통문화체험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층별 공간 배치 현황 〉

구분	사용 현황
1층(105.66㎡)	프로그램실 : 주민개방, 교육프로그램 지원
2층(106.59㎡)	청소년쉼터, 샤워실, 식당/주방 : 보호, 휴식, 취식 등
3층(76.18㎡)	사무실, 상담실 : 시설 관리, 상담 등
4층(44.94㎡)	다목적실, 노래방, 집단상담, 각종 회의 등

- 강북일시쉼터의 명칭*은 여성가족부의 요청(2023년 5월)에 따라 변경(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했으나, 이를 조례(「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명칭과 상이한 명칭(조례상 명칭)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변경된 명칭을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혼란의 여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당 초	변 경	비 고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930(2023.5.26.)

※ 민간위탁 동의 심사 시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

- 민간위탁에서 위탁할 시설(재산, 시설명, 위치), 사무, 기간의 ‘특정’은 필수요소임.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를 별표1로 정하고, 제10조는 별표1에 있는 청소년시설만 자치구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실제 사용하는 시설명'과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명'이 상이한 경우로, 평생교육국은 '실제 상용하고 있는 명칭'이 아닌 '조례 별표1에 규정된 명칭'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 청소년쉼터의 명칭 체계 〉

- 시설별로 상이한 청소년쉼터 명칭 체계를 일원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8조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쉼터임을 명시
- 명칭표시방법 : 지역 - 성별 - 유형 - 청소년쉼터
 - (예시) ① 서울시립강남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대구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 ② 서울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출처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사업안내 2권 197p 발췌

※ 여성가족부가 시립청소년시설의 명칭 변경을 요청한 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8조는 무허가 시설이 청소년보호시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을 일정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 이유는 위기 청소년들이 무허가시설을 공공시설로 오인하는 것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거나,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중략)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여성가족부 명칭체계와 상이한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명칭

- 청소년정책의 변화(선도·교정·육성·수련→참여·활동·교류·복지·보호 등)에 따라 청소년시설도 다분화되어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서울시는 시설 간 협력체계를 강화(시설별 고유특성 유지)하거나, 일반 시설을 '통합 서비스 제공시설로 전환'을 추진했음.
- 2013년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진료·쉼터·성문화 등의 기능을 통합한 드림센터(삼성동)를 개관했고, 2014년 본 센터(강북드림센터)도 설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쉼터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센터'로 변경하고, One-Stop서비스(활동·복지·보호 통합) 제공을 추진한 바(보라매, 창동, 광진 등)도 있음.

〈 2018 청소년 희망도서 서울 시행계획 〉

- ⑤ 청소년시설 혁신으로 청소년이 주인인 수련관을 개편(3-1-1, 3-2-1)
 - 청소년수련관을 종합지원센터로 기능 확대하여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상담·보호·마을학교 등을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출처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2018 청소년 희망도서 서울 시행계획 4p 발췌

- 강북일시쉼터의 성과보고서(2022년 실적을 2023년도에 평가한 결과)는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보다 ‘시설·사업의 관리·운영’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평가도 주요 핵심사업(보호, 조기개입, 가정복지)이 아닌 보조사업(청소년 안심지킴이, 토크데이, 가출예방 교육, 사이버 아웃리치)만을 평가하여, 본 성과보고서를 통해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예산 효율성 확보(동일규모의 예산투입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임을 고려해 볼 때, 목적달성 수단의 효율성과 사업 결과의 효과성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운영평가 개요 〉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 시립 청소년시설 평가체계 개선계획('20.9.23)에 의거 종합성과평가와 운영평가 일원화
- 평가기간 : 2022년도(2023년 6월 실시)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평균 93.88점(100점 만점)

출처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보고서

- 강북일시쉼터의 보호기간이 최장 7일로, 청소년의 위기에 조기 개입, 가출 장기화 예방, 사회서비스 제공·연계 및 귀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나, 강북센터는 일시쉼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3~9개월) 또는 중·장기 쉼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직업교육·진로체험, 문화·체육캠프, 전통문화체험, 가출팸·독립가구 지원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고, 보호기간(7일)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시청소년쉼터 운영모형 〉

이용대상	목적	서비스요소	활동내용	산 출	성 과
거리위기청소년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된 청소년) ① 노숙청소년 ② 배회청소년 ③ 가출, 귀가 반복 위기 청소년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한다	현장지원	- 음식제공 - 위생서비스 - 피복제공 - 의료서비스 - 휴식제공	- 음식제공 건수 - 위생서비스 건수 - 피복제공 건수 - 의료서비스 건수 - 휴식제공서비스 건수	- 보호인원 - 귀가인원 - 대안생활 시설 연계 인원 - 만족도(%)
	청소년 가출 및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한다	조기개입	- 사회성 향상 지원 - 정서지원 - 거리아웃리치(상담)	- 사회성향상지원건수 - 정서지원 건수 - 거리아웃리치(상담)건수	
	청소년을 사회체계와 연결한다	연계활동	- 서비스 정보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연계 - 귀가지원 - 지역사회교육	- 서비스정보제공건수 - 지역사회서비스연계건수 - 귀가지원 건수 - 지역사회교육 건수	

출처 :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 269p 발췌

- 강북일시쉼터의 운영은 일반 행정에 역량이 집중된 공무원보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특화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할 것으로 보이나,
- 본 센터의 제공 프로그램의 적정성, 공공시설의 운영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는 평가방식 및 환류체계의 확보 등이 수반될 경우 민간위탁의 효과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이하 ‘삼동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이하 ‘망우단기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2024.6.30.)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본 시설을 3년간 (2024.7.~2027.6.)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현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 위탁 사무 내용
 -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단체 연계활동 지원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
- 개관일자 : 2015.01.01.
- 시설규모 : 지상 2층, (대지) 241.56㎡, (연면적) 483.12㎡
- 수용인원 : 20명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9~24세 이하 여자청소년(가정 밖, 갈등가정, 해체가정 청소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4.7.1. ~ 2027. 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 844백만원(2024년, 인건비-526백만원, 운영비-63백만원, 사업비-255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망우청소년센터 내 위치한 망우단기쉼터는 9세에서 24세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비행 예방, 긴급생활 지원,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원은 20명이며, 3개월 이내(최장 9개월)의 단기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설치되었고, 개관 시부터 삼동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음.
- 총 14명(정규직 8명, 기간제 8명)이 8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3개 사업 41개 프로그램(교육문화사업 16개, 목적사업 9개, 상담지도사업 19개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금 현황 〉 (단위:천원)

2024	2023	2022	2021
843,882	819,842	772,481	766,510

〈 2024년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의 사업추진 현황 〉

분야	사업명
교육문화사업 (16개 사업)	바리스타, 체력단련, 공예창작, 요가, 문화체험, 미니운동회, 청소년 파티, 행복나들이, 가족여행, 학업지원, 축하파티, 자립지원, 쉼터 만족도 조사, 쉼터 간담회, 입소자 자치회의, 인권타임즈
목적사업 (6개 사업)	일상생활지원, 식사생활지원, 의료서비스, 자치활동, 보호서비스, 법률지원
상담지도사업 (19개 사업)	개인상담, 심리검사,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가족상담, 사후관리, 입소적응지원, 힐링 산책, 동물 교감, 통합예술치료, 모래놀이치료, 성교육, 우울자살예방교육, 중독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수퍼비전, 사례회의, 자원봉사, 템플스테이, 운영보고서 및 소식지 발간, 쉼터 홍보, 아웃리치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추진 경위 〉

- 2014.8.14.~2017.6.30. : 신 규 (사)삼동청소년회
- 2017.7.01.~2019.6.30. : 재계약 (사)삼동청소년회
- 2019.7.01.~2022.6.30. : 재위탁 (사)삼동청소년회
- 2022.7.01.~2024.6.30. : 재계약 (사)삼동청소년회

- 평생교육국은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기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망우단기쉼터의 명칭은 여성가족부의 기준에 따라 변경(‘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되었으나, 이를 조례(「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위수탁협약서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망우단기쉼터는 매년 1월 중순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생교육국은 이를 3월 또는 5월에 승인하고 있으며,
 - 늦은 사업계획의 제출과 승인으로 인해 매년 1/4분기(1~3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연초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의 사업계획 제출시기 〉

제7조(사업계획) ① “삼동청소년회”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전년도 11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3p 발췌

※ 지연되는 사업계획의 제출과 승인의 시기

- 평생교육국은 국회(국고보조금) 및 의회(민간위탁금)의 예산 확정시기 및 여가부 확정 내시의 시기 등을 이유로 연초 사업계획의 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반복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정적 사업을 추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의 사업계획 제출·승인 시기 〉

연도	구분	건명	제출일	승인일
2021년	사업승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1.1.27.	2021.5.24.
2022년	사업승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2.1.18.	2022.3.10.
2023년	사업승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3.2.8.	2023.3.7.

- 쉼터의 정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는 타 청소년복지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고 있으나, 쉼터는 청소년을 24시간 보호하는 업무로 연중 무휴로 운영하며, 응급사항 대응, 위기 청소년 긴급 구조의 사무 등을 수행하여, 휴일 및 야간에도 2명 이상의 근무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법령과 조례 등은 각각 다른 수(법령-8명, 조례-10명, 시설-16명)로 쉼터의 정원을 정하고 있어, 효과적 쉼터 운영을 위해 정원 현실화 또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쉼터의 부족한 인력은 특별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 또는 사업비 속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
(단위:명)

구분	일시 쉼터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쉼터	자립 지원관
		10명 미만	10~15명 미만	15~20명 미만	20~25명 미만		
합 계	6	4	5	8	9	4	3
시설장	1	1	1	1	1	1	1`1
보호·상담원	4	2	3	5	6	2	-
자립지원요원	-	-	-	-	-	-	1
행정원	-	-	-	1	1	-	-
조리원	-	-	-	1	1	-	-
행정원·조리원	1	1	1	-	-	1	1

출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1 발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청소년시설 정원 〉
(단위:명)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10	1	-	1	1	2	4	1

출처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2 발췌

〈 2024년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인력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16	10	1	-	1	1	2	4	1	6
현원	14	7	1	-	1	1	1	3	-	7

- 또한, 망우단기쉼터는 현원(14명)의 절반을 계약직(7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본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80% 이상의 고용 유지·승계”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다는 점, 본 시설을 동일 수탁기간이 11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50%의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바,
-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립시설 사업의 전문성 확보, 서비스 제공 노하우의 유지, 인력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 확인 후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고용 승계·유지 의무사항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 발생

▶ ‘특별한 사정’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 관계부처 합동)에서 명시한 사유
 - ▲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예: 민간대체인력뱅크, 일터혁신 컨설팅지원 등)
 - ▲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예: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 ② ‘사무종료,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③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 해야 하는 경우

▶ ‘승계범위 조정’*이 가능한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고용승계 비율 조정범위(예시) : 25%~80%

- ①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 분리, 내용변경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 시
- ② 수탁기관의 장 및 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 및 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 ③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총인원이 극소수인 경우(종사자 총인원 극소수(예시) : 10명 미만)

3.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탁틴내일’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2024.6.30.)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본 시설을 3년간(2024.7.~2027.6.)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현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지하1, 지상2 일부
- 개관일자: 2015년 4월 1일
- 시설규모: 1,510.75㎡
- 주요시설: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
- 위탁기간: 3년(2024.7.1.~2027.6.30.)
- 선정방식: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306백만원(2024년, 국비 86백만원, 시비 220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법률(「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성문화센터는 총 7개소로,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중랑성문화센터)는 ‘사단법인 탁틴내일(이하 “탁틴내일”)’이 10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6명의 인력과 2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3개 분야, 11개 사업,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시립성문화센터 현황 〉

(단위 : m²)

시설별	면적	소재지	개관일	위탁기간	운영단체
아하!	763	영등포구 영등포동	2001.01.01.	'21.12.07.~'24.12.06.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광진	219	광진구 광장동	2007.11.22.	'23.07.01.~'25.06.30.	(사)홍사단
창동	183	도봉구 창동	2007.10.18.	'23.07.01.~'26.06.30.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드림	210	양천구 신월동	2012.10.01.	'22.07.01.~'25.06.30.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성북(중)	1,510	성북구 길음동	2015.04.01.	'22.07.01.~'24.06.30.	(사)탁틴내일
동작	340	동작구 신대방동	2016.05.19.	'23.07.01~'25.06.30.	(사)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은평	143	은평구 녹번동	2020.01.01.	'22.12.16.~'24.12.15.	(사)탁틴내일

〈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현황 〉

- 2014.12.10. ~ 2017.11.30. : 신 규 (사)탁틴내일
- 2017.12.01. ~ 2019.06.30. : 재계약 (사)탁틴내일
- 2019.07.01. ~ 2022.06.30. : 재위탁 (사)탁틴내일
- 2023.07.01. ~ 2024.06.30. : 재계약 (사)탁틴내일

〈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프로그램명)
교육분야 3개사업 9개프로그램	체험관 성교육(①체험관 성교육, ②장애 체험관 성교육, ③양육자 및 지도자 대상 체험관 성교육, ④열린체험관, ⑤모두를 위한 월경이야기, ⑥성폭력 재범 예방교육), 찾아가는성교육(①비장애 찾아가는 성교육, ②장애 찾아가는 성교육, ③양육자 및 지도자 찾아가는 성교육), 장애학생 성행동 종합지원
문화분야 3개사업 4개프로그램	캠프(①사춘기 캠프, ②가족 캠프), 캠페인(우리동네 달성이), 축제(S-SAY 축제)
조직분야 5개사업 9개프로그램	자문회의·간담회(①운영·인사위원회, ②장애 성행동 자문회의), 자원활동가 양성(교육활동가 운영), 네트워크 및 대외활동(①지역 네트워크, ②공동협력사업), 청소년 동아리(장애청소년동아리), 기타(①홍보, ②프로그램 개발, ③직원역량강화)

〈 2024년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약직
정원	5	5	-	1	-	1	-	3	-	-
현원	5	5	-	-	1	-	1	3	-	-

〈 2024년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현황 〉

(단위:천원)

구분	면적(m ²)	용도
계	1,510	
2층	147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창고
지하1층	595	워크숍룸, 강사실, 대기실, 다목적룸, 교육체험관1, 교육체험관2
전용·공용면적	767	주차장, 복도, 화장실 등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중랑성문화센터)는 중랑구(7호선 용마산역 역사 내)에서 성북구(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로 이전하여 명칭을 변경(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하였으나, 이를 조례(「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 명칭과 조례상 명칭이 상이하여, 시민의 혼란과 행정 업무상 오인이 있을 수 있고, 본 동의안에서도 대상을 명쾌히 특정하지 못하고,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바, 조례상 명칭과 실사용 명칭의 일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전문성 활용하여 능률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일 수탁기관이 장기간 수탁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혁신과 개선 등이 도외시되어, 성과보고서 여러 분야에서 ‘미흡’과 ‘노력 필요’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민간위탁이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운영방식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중랑성문화센터는 운영성과를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 5천 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고, 이중 청소년의 연평균 이용은 약 1만명 수준으로,
- 서울시 학령인구(6~21세)가 110만 여명이라는 점, 시립과 구립 성문화 센터는 8개소(시립7, 구립1)인 점을 감안하면 성과는 매우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시설이 설립시 기대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여부, 사업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했는지 여부, 장기적 사업계획과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4년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성과 〉

(단위:명)

	총계	청소년	성인	어린이
최근3년 평균	15,882	10,623	4,968	291
최근3년 합계	47,646	31,869	14,903	874
2021년	16,305	11,030	5,088	187
2022년	18,825	12,494	6,016	315
2023년11월	12,516	8,345	3,799	372

※ 비고 : 2023년 본센터 이전으로 인테리어 공사로 이용인원이 타년도 대비 소폭 하락함.

〈 서울특별시 인구 통계 〉

(단위:명, %)

서울시 총 인구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9세-24세)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0세-18세)		학령인구 (6~21세)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9,386,034	1,354,699	14.4%	1,163,362	12.4%	1,165,539	12.4%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청소년인구 통계”, 자료갱신일 : 2024.01.25.)

- 그간의 성교육은 생물학적 지식 또는 단편적 사실만을 전달하거나, 실적 위주의 성교육 등이 주류를 이루어, 청소년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어,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 성문화센터는 횡수나, 인원수, 학교 수로만 성과를 제출하고 있고, 평가에서 프로그램의 구체성 미흡, 확장성 미흡, 교육대상자의 반응 수렴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당초 설립목적인 ‘포괄적 관점의 성교육과 성문화 조성’은 도외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성교육은 형식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삶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건강, 신체의 발달, 인적관계, 가치, 권리, 문화, 젠더, 폭력·안전,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바람직한 성문화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는 성문화센터의 교육 및 사업 방식에 대한 개선 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성교육의 변천 및 특징

- 1982년 이전의 성교육은 대부분 순결교육이 주류를 이루었고, 1982년부터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할 목적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5년)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년)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게 되었음.
- 학교 내 성교육은 재량수업, 보건수업, 일반수업(체육시간, 생물시간, 가정시간 등) 중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또한 성문화센터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이 실시되나, 초빙교육도 1년 1회~2회에 한정되며, 상호 소통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생물학적, 발달학적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학교 내 성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음.